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영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625

발의연월일: 2021. 4. 21.

발 의 자: 박영순・이규민・허종식

황운하 · 조승래 · 이용호

이상민 · 신정훈 · 이상헌

윤준병 · 김병주 · 맹성규

오영환 · 강준현 · 김의겸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, 즉 농업인과 농업법 인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농지가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는 농지 취득제도와 관련하여 심사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투기우려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구·읍·면의 장 소속으로 농지위원회를 두고, 주말·체험영 농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,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의 이용실태 조사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투기를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

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되어 그 농지를 처분한 자에 대하여 해당 농지의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3, 제8조의4, 제12조의2 및 제59조제1호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제6조제2항제2호·제3호"를 "제6조제2항제2호"로 한다.

제8조의3ㆍ제8조의4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3(농지위원회) ①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구·읍·면의 장 소속으로 농지위원회를 둔다.

- ② 농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·구· 읍·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- 1. 농지 취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- 2. 농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3.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
- 4. 농지와 관련된 시민단체
- ③ 그 밖에 농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
령으로 정한다.

- 제8조의4(농지의 이용실태조사) ① 시·구·읍·면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농지 이용실태 조사의 주기, 방법,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의2(과징금) ① 시장(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)·군수 또는 구청장은 투기를 목적으로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되어 그 농지를 처분한 자에 대하여 해당 농지의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1.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)	제8조(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	②
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	
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	
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	
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구·	
읍·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	
여야 한다. 다만, 제6조제2항제	<u>제</u> 6조제2항제
2호·제 3 호·제 7 호·제 9 호·제 9 호의	<u>2ই</u>
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	
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	
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	
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8조의3(농지위원회) ① 「부동
	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
	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
	관한 허가구역 등 대통령령으
	로 정하는 투기우려 지역에 소
	재하는 농지의 취득에 관한 사
	<u>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구·</u>

읍·면의 장 소속으로 농지위원 회를 둔다.

- ② 농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·구·읍·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- 1. 농지 취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- 2. 농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
- 3.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 인
- 4. 농지와 관련된 시민단체
- ③ 그 밖에 농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의4(농지의 이용실태조사)
① 시·구·읍·면의 장은 제8조제
1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농지 이용실

<신 설>

<신 설>

제5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제59조(벌칙)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-------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--------의 벌금에 처한다. ------

<신 설>

대 조사의 주기, 방법,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

제12조의2(과징금) ① 시장(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)·군수 또는 구청장은 투기를 목적으로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되어 그 농지를 처분한 자에 대하여 해당 농지의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9출	소 (벌직)	 	

1.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시 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당

	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
	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
	고 인정한 자
<u>1.·2.</u> (생 략)	<u>2.·3.</u>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
	같음)